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-104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현행 조례의 상위법령(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)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내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우선계약대상 범위를 추가하고 명확히 하고자 우리 구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에 따른 근거조항 추가(안 제1조)

현 행	개 정 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장애인복지법 제42조- 노인복지법 제25조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	<p>〈추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

나. 우선계약대상 추가(안 제5조)

현 행	개 정 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장애인- 65세 이상 노인-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-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	<p>〈추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북한이탈주민

다. 우선계약대상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추가 및 정비(안 별표)

현 행	개 정 안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기관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5. 9. 24. ~ 2015. 10. 14.(의견제출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5. 10. 29.)
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
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8조의2”를 “제68조의2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”으로, “위탁할 때에는”을 “위탁할 때에는”으로, “또는 가족”을 “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또는 가족”을 “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(제5조제1항 관련)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가족 · 한부모가족복지단체	독립유공자 ·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	북한이탈주민
1	장애등급 1~2 급으로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「국민기초 생 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	「국민기초 생 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	「국민기초 생 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	「국민기초 생 활 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· 의료급여 수 급자
2	장애등급 3~4 급으로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(주 민세 개인균등 분 제외)	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(주 민세 개인균등 분 제외)	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 조에 따른 지 원대상자 중 「국민기초 생 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자	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(주 민세 개인균등 분 제외)	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(주 민세 개인균 등분 제외)
3	장애등급 5~6 급으로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(주 민세 개인균등 분 제외)		한부모가족 복 지단체		

※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.

1.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
2.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
3.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

신·구조문대비표

우선하여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,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(이하 "장애인등"이라 한다)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.

② (생략)

[별표]

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
우선순위
(제5조제1항 관련)

순위	장애인 상노인	65세이 상노인	한부모가 족·한부모 가족복지 단체	독립유공 자·국가유 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	<신 설>
1	장애등 급 1~2 급으로 「국민 기초생 활보장 법」에 따른 수 급자	「국민기 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수급자	「국민기 초생활보 장법」에 따른 수급 자	「국민기 초생활보 장법」에 따른 수급 자	
2	장애등 급 3~4	납세 실 적이 없	「한부모 가족지원	납세 실적 이 없는	

----- 또는 가족, 북한
이탈주민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]

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
우선순위
(제5조제1항 관련)

순위	장애인	65세이상노인	한부모가족·한부모가족복지단체	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	북한이탈주민
1	장애등급1~2로 '국민기초생활법'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		
2	장애등급3~4	납세설적이 없	「한부모가족	납세설적이 없	납세설적이 없는

3	장 애 등 급 5~6 급 으로 「국 민 기 초 생 활 보장 법」에 따른 소 급자 또 는 남세 실적 이 없는 사 람(주민 세 개인 균 등 분 제외)	법」 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 자 중 사람(주민 세 개인균 등분 재 분 제외) 수급자 자를 제외 한 자	금 으로 「국 민 기 초 생 활 보장 법」에 따른 생 계 · 의 료급여 수급자 또는 남 세 실적 이 없는 사람(주민 세 개인 균 등 분 제외)	지 원 법」 제5 조에 따 른 지원 대상자 중 「국 민 기 초 생활 보 장 법」 에 따른 생계 · 의료급 여 수 급자를 제외 한 자	는 사람 (주민 세 개인균 등분 제 외) 는 사람 (주민 세 개인균 등분 제 외)	